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7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·차량 및 단속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

- 제한지역 : 충청북도 전 지역
- 제한대상 :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
- 단속방법 : 무인단속시스템 설치·운영

나.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구성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- 미세먼지 관련 정책 심의 기구 설치 근거 마련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
- 충청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조직되어 운영하던 ‘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’의 설치근거를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1조는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·대상지역·대상차량·발령시간·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‘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’의 설치·기능·구성·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1조는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단속에 관한 사항 등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권한을 규정하였음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 예고('19. 5. 24.~'19. 6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사용된 ‘도민’, ‘도의원’은 잘못된 약칭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며,
- 안 제10조 중 ‘해촉’은 ‘위촉 해제’ 용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기타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과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제명에 비하여 조문에 담긴 내용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명 또는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.
- 안 제2조 운행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행 제한이 상시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를 추가해야 함.

- 안 제6조는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, 협의회는 협의·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또는 심의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안 제8조 협의회 간사를 2명으로 두고 있는데 시행 중인 타시도 관련 조례에서는 모두 간사를 미세먼지 담당업무 과장 또는 팀장(사무관)으로 두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안 제9조는 심의기능이 없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임.
- 안 부칙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 대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므로, 시행일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,
- 종전 '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의회 재구성 및 위원의 재위촉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의 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